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10년 경과 분말형태 소화기 교체의무 재 강조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및 『동법 시행령』
- 나. 안전방재처-767('17.2.10.) 『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화기 내용연수(10년) 설정 알림』
- 다. 안전계획처-1236('17.2.14.) 『지하철 소방 및 구호장비 관리실태 점검 요청』
- 라. 안전계획처-1382('17.7.17.) 『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화기 교체의무 재 알림』

2. 소방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분말형태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되었음을 재 강조하오니, 관련 부서에서는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**'18.1.27.까지** 교체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또한 유예기간('18.1.27.) 이후 대외기관(감독기관, 소방관서, 언론 등)에서 점검 강화가 예상되오니, 기 교체 부서에서는 '안전점검의 날' 등을 활용하여 교체 누락된 소화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사용 및 불량 발생에 대비하여 적정 예비수량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소화기 배치 기준 [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]

- 가.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,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
- 나.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㎡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

- 붙임 : 1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부.
 2. 동법 시행령 1부.
 3.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1부. 끝.

서울교통공사사장

서명생략

수신자 가1~가53,나1-2, 다1, 마27, 아1-3,나1-아19,나1-아19,자1-자5

차장 김용빈

부장 이운영

팀장 손태진

처장 11/24

민광만

협조자

시행 안전계획처-5377 (2017.11.24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9448 전송 / rara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